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련 부서 : 행정관리담당관

□ 제안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5916호)과 동규정시행규칙(교육부령 제725호)이 '98.10.16자로 제정·공포되고,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,828명으로 함(안 제2조)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,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함(부칙 제2조)
- 정원조정(감축) 내용(안 제2조)

구 분	현 재	조 정	증 감
계	3,130	2,828	△302
교육위원회 의사국	15	13	△2
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	3,115	2,815	△300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과 같음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,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82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: 별도 조례로 정한다.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815명

제3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